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9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안 제3조)
- 위촉,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및 제5조)
- 명예환경감시원증 및 교부 및 관리(안 제6조)
- 교육 및 활동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5. 5. 9.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안 제3조)
- 위촉,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및 제5조)
- 명예환경감시원증 및 교부 및 관리(안 제6조)
- 교육 및 활동지원 등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서는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통한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함.

- 안 제4조(위촉)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조건을, 안 제5조(임기 및 해촉)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해촉 조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함.
- 안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에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무보수 원칙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하여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 가. ~ 바. (생 략)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 더. (생 략)
5. ~ 7. (생 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

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 · 시행

2. 자연생태 ·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 · 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
 4. 자연환경훼손지에 대한 복원 · 복구 대책의 수립 · 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 시행
 6. 민간단체 · 사업자 · 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 · 연구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 · 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 · 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430
----------	-----

발의연월일: 2025년 5월 9일

발의자: 이은미 의원

찬성자: 박춘희, 심현정,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 제한(안 제3조)
- 나. 위촉,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명예환경감시원증 및 교부 및 관리(안 제6조)
- 라. 교육 및 활동지원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환경정책기본법」
- 나. 예산조치: 붙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2025. 4. 25. ~ 2025. 5. 7.(13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검토안(환경과)	사유	의회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 · 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 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과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타 조례 개정 불요 ※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수정안 반영안함]
제4조(위촉)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4조(위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읍·면 법정리 별 주민등록상 거주자 1인으로 한정하며, 2년 이내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환경분야에 대한 2. 기타 환경보전에	감시원 위촉 자격과 인원수 설정 ※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조례」 참고	[수정안 반영안함]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제4조에 따른 자격미달 또는 법 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 검토안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수정안 반영안함]

<p>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p>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p> <p>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p> <p>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할 수 있고, 환경분야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의 100% 상향하여 지급 할 수 있다.</p>	<p>활동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p> <p>※ 「서귀포시 명예환경감시원운영 규정」 및 「속초시 클린속초환경감시단 운영 규정」 참고</p>	<p>[수정안 일부 반영함]</p> <p>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의 100% 상향 지급할 수 있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p>	<p>제1조 검토안에 따른 부칙 제2조 삭제</p>	<p>[수정안 반영안함]</p>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

2.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4조(위촉)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면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

(앞면)

(뒷면)

<u>명예환경감시원증</u>	
(제 호)	
사 진	
(3cm×4cm)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평 창 군 수(직인)	

-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계도활동,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견의 등을 임무로 한다.
-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
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평창군 환경과

○ 용지규격 : 6cm×9cm (가로×세로)

○ 지 질 : 120L/B

○ 색 상 : 노랑색

○ 사 진 : 3cm×4cm (가로×세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 · 군도(郡道) · 구도(區道)의 신설 · 개선 · 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명예환경감시원 신고포상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신양문
연락처	033- 330 - 2362